

I. 제조물책임(PL)소송이 성립되는 조건

자료제공 · 한국PL센터

기·획·특·집

PL Law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간 『안전한 전기제품』은 PL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하여 관련 업체들이 PL법을 정확히 고지하여 사후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목 차

- I. 제조물책임소송이 성립되는 조건
- II. 미국 PL법의 특징
- III.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

원고(피해자)측의 입증 성립되기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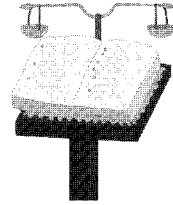
제조물책임(PL)소송에서는 어떤 이론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든 원고(피해자)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①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
- ② 당해 제조물이 유통되면서 그 결함이 존재했다는 것
- ③ 그 결함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 ④ 그 사고가 그 결함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것
- ⑤ 원고는 통상의 사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
- ⑥ 당해 제품은 사고시점에서 법률상의 책임기간내에 있었다는 것

또,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고발생시가 아니라 제조자에 의해 시장에 유통된 시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단, 건강 피해 등은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추궁당하는 요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자는 종전보다 그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받게 된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조자는 제조물의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는 요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



응하기 위한 사내체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조자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요건에 대해 포인트를 해설하기로 한다.

1) 제조물결함

원고(피해자 = 이용자)가 피고(가해자 = 제조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원고(이용자)는 문제의 제조물이 표준 이하의 물건이라는 것(즉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제조물이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유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원고(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자를 비난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결함발생의 시기

제조물은 설계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기업내에서 가장 엄격한 검사 기준에 합격한 제조물이라도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명백히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로 생긴 결함이었던더라도 모두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PL소송에 있어서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것은 언제였는가'라는 결함발생시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일 '그 제조물이 제조자 손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결함품이었다' 라면 제조자의 책임이 되지만 그 결함이 제조자의 손을 떠난 후에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제조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제조물의 결함과 설계상의 문제점은 사용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조자의 손을 떠난 후에도 결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점을 제조자측이 간과하면 재판은 원고(이용자)측에 유리한 전개가 된다.

3) 사고와 결함의 인과관계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제조물이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원고(이용자)가 증명한 것만으로는 즉시 '원인은 제조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예를 들면 제조물이 결함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고발생과는 무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결함은 있었지만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 실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그 제조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과실이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과관계의 판단이 어려운 예가 많은 것이 제조물책임 문제의 특징이다.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은 있지만 책임판단은 결국 재판관(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전권사항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4) 손해와 결함의 인과관계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피고(제조자)에 책임이 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함이 어느 정도 그 손해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도 결함에 그 제조물의 오·남용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고발생에 무언가 관여한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갖고 있는 제조물을 이용자가 오용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단, 이 때에 책임을 결함으로 돌려야 마땅한지 여부의 판단은 재판관에게 위임된다. 재판관은 ㉠ 사고와 결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해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판례를 연구해 대처함이 필요하다.

소송형태와 쟁점

과실책임에 기초한 소송

현행 일본의 민법에서 채용되고 있는 과실책임제도하에서는 원고(이용자)측이

㉠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 그 결함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해서 원고(이용자)측이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때 원고(이용자)측이 그 제조물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 제조물의 사용방법에 있어서, 피고(제조사)측은 제조물의 사용에 있어서 원고(이용자)측에 부주의(과실)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방법에 있어 부주의(과실)의 입증책임을 피고(제조사)측이 지게 된다.

결국 피고(제조사)측으로서는 '원고가 보통의 상식적인 이용방법이 아닌 사용에 따른 사고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고, 입증에 실패할 경우에는 패소가 된다.

무과실책임에 근거한 소송

무과실책임제도하의 소송에서는 '원고(이용자)측

이 제조물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했다는 것', '자칫 잘못해서 제조물을 오용한 것'을 피고(제조사)측이 입증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즉시 피고(제조사)측 승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피고(제조사)측이 면책되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통사람이라면 그 결함을 인식했을 것이다. ... 그런 어이없는 사용방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더욱이 '원고(이용자)측 자신이 일정 수준의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금회의 행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였다는 무모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명시보증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명시보증에 기초한 책임소송에 있어서 원고(이용자)의 행위·태도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은 무과실책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위험을 저질렀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때, 피고(제조사)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원고(이용자)가 제조물이 보증된 품질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 위험한 사용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피고(제조사)측이 면책항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원고(이용자)의 사용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을 이탈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로 끝낼 수 있지만 이 입증에는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